



제24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 범위 확대〉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43호)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99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지역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 범위 확대	4

I . 제안경 위

1. 이원택의원안

1. 제 안 자 : 이원택의원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4. 30.
3. 회부연월일 : 2025. 5. 1.

2. 문금주의원안

1. 제 안 자 : 문금주의원 등 16인
2. 제안연월일 : 2025. 6. 13.
3. 회부연월일 : 2025. 6. 16.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원택의원안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이 법

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고려하여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어촌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지역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면서,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영농자재 또는 농수산물의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 등은 연간 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2. 문금주의원안

2020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유통되고 있던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2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으로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도시에 비해 사용처가 많지 않은 읍·면 지역 주민의 경우 상품권 사용처가 제한되어 그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의 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되고 식품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읍·면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역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 범위 확대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업체에 농산어촌 및 인구 감소지역에 소재한 영농자재 또는 농수산물의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읍·면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이원택의원안 제7조 및 제8조, 문금주의원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현 행	이원택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읍·면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유통산업발전법」

현행	이원택의원안	문금주의원안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한한다)에 대하여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2. (현행과 같음)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설>	3. 연간 매출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영농자재 또	3.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택의원안	문금주의원안
	<u>는 농수산물의 도</u> <u>· 소매업을 주된</u> <u>업종으로 하는 사</u> <u>업체 등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경우</u> <u>는 제외한다.</u>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	

현행	이원택의원안	문금주의원안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생략)	하는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7조제2항제4호에----- ----- ----- -----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①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등은 지치단체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2025.6)’에서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① 정책필요에 따라 현금성지원을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경우, ②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③ 민간 농자재 판매소가 없는 면지역 내 농협 농자재판매장 및 ④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유형 분류상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에 포함되는 가맹점이 없는 면 지역(‘25년 6월 기준) 內 농협 하나로마트 등은 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2025.6)상 가맹점 등록 허용범위]

(원칙)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 제한

(예외)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 등록 가능

①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 등을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경우

* (예시) 농민수당·아동수당,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정책발행 상품권

②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판매자’인 개별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플랫폼형 사업장은 예외 인정

※ 매장 자체는 비영리 성격, 개별 농민·소상공인이 직접 수익을 취하는 경우여야 함

③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 지역('25.6월 기준) 內 농협 농자재판매장

④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유형 분류상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에 포함되는 가맹점이 없는 면 지역('25년 6월 기준) 內 농협 하나로마트

자료: 행정안전부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단위의 지역 등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2025.6)’과 같이 상품권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게 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원택의원안은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¹⁾에 소재한 영농자재(각 지역농협의 영농자재센터 및 영농자재백화점, 기타 영농자체 업체 등) 또는 농수산물의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농협 하나로마트, 축협 하나로마트, 수협마트 및 기타 농수산물 도·소매시장 등)으로 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현재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허용하려는 것이고, 문금주의원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²⁾ 및 「수산업·어촌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3)에 따른 생산자단체(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읍면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허용하는 방안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범위가 확대되면, 인구 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지역민들의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읍면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읍면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취지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맹점 등록 대상을 확대할 수록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는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2025.6)’에서 일정 범위의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농자재판매소 및 농협 하나로마트에 예외를 인정하여 사용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였다는 점 및 예외를 확대할 경우 병원, 약국, 슈퍼마켓, 주유소 등 주민들의 편의와 밀접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